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 활동과정 및 관련자료 2001.8 사회권연대회의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 II

활동과정 및 관련자료

사회권연대회의

2001년 8월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 II**

활동과정 및 관련자료

사회권연대회의

2001년 8월

<목차>

I.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참여단체 및 담당자	(p1)
I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들(2001년 4월 26일 현재)	(p2-4)
III. 활동 경과	(p5-15)
<자료1> 본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p16)
<자료2> 사전실무분과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보고 (2000.9.4)	(p17-18)
<자료3>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제네바 활동 일지	(p19-26)
<자료4> 언론 홍보활동	(p27-71)
1. 기자간담회(4월 20일) 자료	(p27-30)
2.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보도요청서	(p31-33)
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자 료	(p34-37)
4. 관련 언론 보도 자료	(p38-71)
<자료5> 2001년 6월 11일 성명서	(p72-73)
<자료6> 사회권 연대회의 재정 보고(2001.6월 현재)	(p74)
<자료7> 사회권위원회 최종 견해를 홍보한 해외단체 목록	(p75)
<자료8> 사회권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와의 간 담회	(p76-81)

**I.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참여단체 및 담당자**

I.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참여단체 및 담당자

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통신 ID
노동건강연대	최은희	2269-3891/011-819-7894	hwlsa@chollian.net
녹색연합	김타균	02-747-8500 * 016-280-0509	greenpower@greenkorea.org
민주노총	권두섭	02-2636-0161/ 국제2636-0165 017-366-1103	consult@nodong.org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533-7971/011-741-4984	yeominlaw@hanmail.net
	김진	533-7971	dzinkim@hanmail.net
	김기연	522-7284/016-289-3701	angelakim94@hotmail.com
	박경신	011-9818-7310	kspark@hklawyer.co.kr
	박찬운	581-0650/011-296-2032	kya62@chollian.net
이상희	3458-0969/011-9884-4892	shlee@hklawyer.co.kr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성낙돈	02-901-8459/ 888-3683(민교협) 016-705-5620	nakdon@center.duksung.ac.kr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민)774-8774/F)774-8773 760-3278/016-271-1411	tsmyr@jinbo.net health14@plaza.snu.ac.kr
	김용진		sulsung@hitel.net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766-6024/F)766-6025	inyeeh@korea.com
사회진보연대	구미영	778-4001/756-3656 016-699-0600	equu76@hanmail.net
이주노동자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대환)	011-710-7225/985-9061	ilovestrike@hanmail.net
	외국인노동자대 책협의회(안성근)	747-6831/016-747-6831	jcmk@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741-5363	jylee0530@orgio.net rights@chollian.net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은종균	521-5364 017-802-1900	cowalk@chollian.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욱	016-230-3466/3411-8321(학교)	kjedps@chollian.net
	최철호 대외협력실장	019-399-9971/675-6181	cchkey@ktu.or.kr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이은아	723-5056	welfare@pspd.org/moon@pspd.org euna@pspd.org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708-4292/011-808-9893	kocer@chollian.net
문화개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연대 (김상철)	018-342-8270(김상철) 729-6851-2(민예총)	nilblue@orgio.net(김상철)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2273-9535/016-813-0089	ks29@women21.or.kr

II.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들

II.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위원들(2001년 4월 26일 현재)

이름과 주소	전화/팩스/이메일	언어	특징
Mr. Mahmoud Samir AHMED Ambassador 3 Assiouti Street Manchiet El-Bakry Cairo, EGYPT	Cairo : Fax +202 256 6879 Cairo : Tel +202 259 9553 +202 257 4454 Nice : 11 Bd.Maeterlinck, 06300 Nice Tel. +33 493 263 457	A(E)	한국 담당 위원(2차 보고서)
Mr. Clement Atangana Cour Supreme du Cameroon Yaounde, CAMEROON	Yaounde Tel/Fax. +00 237 22 0576 To call first & ask to change for fax mode Tel. +237 23 00 88	F	
Ms. Rocio BARAHONA RIERA Profesora de Derecho Internacional, Universidad de Costa Rica Universidad ARCIS-CHILE	Tel. 00 593 2 232 121 Fax. 00 593 2 901 596 E-mail. rbarahona@hoy.net		
Mrs. Cirginia BONOAN-DANDAN College of Fine Art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Diliman, Quezon City 1101 Republic of the PHILIPPINES	Private. Tel/fax +632 926 1110 E-mail vbdslne@vasia.com	E	의장
Mr. Dumitru CEAUSU Str. Radu Boiangiu N.4-6, apt.22 Sector 1 Bucarest, ROUMANIE	Tel/Fax +401 224 4041	F/E	다소 보수적(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하지만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의료보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했음.
Mr. Abdessarat GRISSA 176 rue El Kali Narges II Port El Kantaoui Hammam Sousse 4089, TUNISIA	Tel/Fax +216 3 246 030	A/E/ F	위원들 중 가장 자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
Mr. Paul HUNT Human Rights Centre, Law Depart. University of Essex Wivenhoe Park Colchester CO4 3SQ ENGLAND	Tel: +44 1206 873 333 (work) +44 1206 873 775 (direct) Fax: +44 1206 873 627 E-mail paulhunt28@hotmail.com +44 1206 825-142(private)	E	매우 성실. 다른 위원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 NGOs들에게 우호적. 교육권, 인권교육,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심. 빈곤에 관한 사회권위원회 성명서 초안 작성
Mr. Valeri KOUZNETSOV Diplomatic Academy 53/2 Ostozhenka Str. 119021 Moscow, RUSSIAN FEDERATION	Tel. +095 245 2041(work) Fax. +007 095 244 1878	E/R	

이름과 주소	전화/팩스/이메일	언어	특징
Professeur Giorgio MALINVERNI Universite de Geneve Faculte de droit Departement de droit constitutionnel UNI MAIL, 40, Bd. du Pont-d'Arve 1211 GENEVE 4, SWITZERLAND (Daniela DELGADO Secetaire du Departement de droit constitutionnel)	Tel: +41 022 705 8530 Fax: +41 022 705 8536 E-mail : Giorgio.Malinverni@droit.unige.ch	F/E	건강권, 난민 문제 관심 성실. 우호적.
Mr. Sergei MARTYNOV First Deputy Foreign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 Lenin Street 220030 Minsk BELARUS	Tel. +00 375 17 227 6458 +00 375 17 227 2922 +00 375 17 227 8998 Fax. +00 375 17 227 4521 +00 375 17 220 1964		
Mr Jaime MARCHAN ROMERO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uito, EQUADOR	Tel. +593 2 568 626 Fax. +593 2 228 092 E-mail. secgener@mmrree.gov.ec	S/E	문화적생활을향유할권리 NGOs에 우호적
Mr. Ariranga Govindasamy PILLAY Chief Justice, Supreme Court Jules Koenig St. Port Louis, MAURITIUS	Tel +230 212 1905 +230 211 8686 Fax +230 211 8787 E-mail ag.pillay@internet.mu		*주거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 달하게 발언 NGOs가 주는 정보를 적 극적으로 활용
Mr. Eibe RIEDEL University of Mannheim Schloss, Westflugel 68131 Mannheim, GERMANY	Tel +49 621 181 1417/8 Fax +49 621 181 1419 Email riedel@jura.uni-mannheim.de Private +49 6321 84819	E/F	건강권, 사회보장권 한국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 NGOs에 우호적
Mr. Kenneth Osborne RATTRAY Attorney General's Chambers 79-83 Barry Stree Kingston, JAMAICA	Business Tel +1 876 922 6140 Fax +1 876 922 5109	E	경제 구조조정 중심적인 정부의 태도와 관련, 인 권철학이 무엇인지를 질 문
Mr. Waleed M. SADI Attorney at LAW Columnist, Jordan Times P.O. Box No. 940715 Amman, JORDAN	Tel: +962 6 569 9634 /560 6678 (work) Private +962 6-56-01-218 Mobile: +962 797 661 98 Fax +962 6 569 61 83 +962 6 567 7837 jotimes@jpf.com.jo	E/A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여성/아동/환경
M. Philippe TEXIER Conseiller a la Cour de Cassation 5, quai de l'Horloge 75055 Paris RP, FRANCE	Tel. +33 1 44 32 50 50 Direct +33 1 44 32 74 71 Private +33 1 45 79 05 63 Fax. +33 1 44 32 78 28	F/S	노동 6,7,8조 전문 진지하게 NGOs 의견을 경청. 논리가 명쾌함

이름과 주소	전화/팩스/이메일	언어	특징
Mr. Nutan THAPALIA P.O. Box No. 4582 Kathmandu, NEPAL	Tel: +977 1 284 244 or 259829(message) Fax: +977 1 22 3058 Email : evertran@ccsl.com.np	E	말이 없는 편
Sr. Javier WIMER ZAMBRANO c/o Mision Permanente de Mexico ante la Oficina de las Naciones Unidas Case postale 433 1211 Geneve 19 Private : Morelos 74, San Jeronimo Mexico 10200 DF, MEXICO	Private Tel/Fax 00 525 5950440 00 525 6830542 E-mail:latinal@prodigy.Net.mx		
Secretary of the Committee Mr. Alexandre TIKHONOV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oom 1-025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e, Switzerland	Tel: +41 22 917 9321 Fax: +41 22 917 9046/22 E-mail: atikhonov.hchr@unog.ch		사회권위원회 사무국 사전실무분과회의, 보고서 제출, 서면발표문, 발표(Oral Statement) 위원들과의 간담회 등 사회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 원을 책임지고 있음.

III. 활동 경과

III. 활동 경과

1. 개괄

- 2000년 6월 29일 : '사회권규약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사회권연대회의)' 구성, 공동의 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2000년 9월 4일-8일 : 제25차 사회권위원회 사전회의에 약식보고서 제출
- 2000년 9월 4일 : 위원들 앞에서 약식보고서의 내용 발표
- 2001년 2월 - :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 제출, 유엔의 공식문서로 사회권위원들과 가입국들에 회람됨.
- 2001년 4월 11일 : 사회권위원회에 미리 보고서 제출
- 2001년 4월 23일 :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기 첫날, 사진, 통계 등 시 각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 발표
- 4월 30일-5월 1일 : 정부대표의 발언 등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과정 모니터링, 위원들과의 개별 면담 진행
- 2001년 5월 11일 :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13개 항의 권고를 포함해 총 45개 항으로 구성된 최종견해 발표
- 2001년 5월 15일 : 사회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1년 5월 25일 : 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 발송
- 2001년 6월 27일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 2001년 6월 27일 : '사회권연대회의'로 명칭 변경, 지속적인 활동하기로 결정.

2.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

- 번역 : 김민선
- 영문 감수 : 신미경, 윤나라, 양태훈, 임선영
- 발표문-파워포인트 : 강준열
- 제네바 현지 : 이성훈(팍스로마나), 이우현, 이완희(유엔인권센터), 강은경(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3. 시기별 구체적 활동 경과 : 주요 논의 및 활동

2000년 4월	유엔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 회기가 2001년 4-5월로 앞당겨졌고 한국의 경제사 회문화적 권리실현의 이행 상황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대안적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 음
5월	인권운동사랑방이 반박보고서 활동 관련 간담회를 사회단체에 제안
6월 1일	보고서 활동을 위한 1차 간담회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5층 회의실 참석 : 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교조,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관 : 민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논의 :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3)1995년 사회권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이해 4)2차 반박보고서 작업의 의의를 공유 기본적으로 지난 5년 간의 사회권 실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특히 IMF관리체제 속에서 변화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올바르게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결정 : 다음 회의 때까지 각 단체 별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6월 15일	2차 간담회,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5층 회의실 참석 : 민교협, 민의련, 산추련, 외노협, 전교조, 인권운동사랑방 논의 : 1. 1994-95년 한국의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활동 평가 <긍정적인 면> · 예외적으로 여러 단체의 공동 노력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보고서 제출에 성공했다. · 사회권조약의 실무분과, 사무국 및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아울러 사회권 조약 본 회의에 정식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약의 선택의정서 초안 작성에 대한 사무처의 권유 가 있었다. 그만큼 한국인권단체의 활동에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보고서에 대한 단순한 반박 차원을 넘어서 인권단체들 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 원고 작성 및 예산 마련에 책임분담의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부정적인 면> · 연관 단체들 간의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 · 예산 및 실무분담을 더욱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각 단체 내부의 공동인식과 더 적극 적인 사전인식이 필요하다. 2. 8월 말까지의 대강의 일정에 대해 논의 : 9월 4일부터 8일로 예정된 실무분과 회의에 주요 질의 목록(가장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을 제출한다. 3. 실무위원회 구성하기로 함 : 인권운동사랑방과 민변
6월 24일	실무위원회 회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논의 : 일정 초안, 가이드라인 작성, 실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6월 29일 1차 회의	1. 보고서 작성 활동 연대의 틀 · 활동 시기 : 2001년 5월 경까지 · 활동내용 : 집필 활동, 2001년 4-5월 정보보고서 심의 시 유엔 로비 및 국내 홍보 활동을 위한 연대의 틀 · 명칭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 회의체계 : 참여단체들의 집필책임자 회의, 실무위원회 2.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공유(자료 1. pl6)

6월 29일	3. 재정분담의 원칙 : 보고서 작성 활동에 드는 모든 재정은 공동으로 분담한다. 단, 이후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사회권위원회 참석시 드는 재정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보고서 작성 활동 관련, 세부 재정 계획은 7월 13일 2차 회의 때 검토하고 초기 단체 분담금을 결정한다. 4. 실무위원회의 역할 1)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등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97-2000년 보고서 및 결의안들을 검토, 한국 사회권 상황에 함의가 있는 부분 정리 2)집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실무지원 3)유엔 사회권위원회와의 연락 업무 4)사전 실무분과회의 및 심의 회기 시 로비 활동 기획 및 지원 5)국내홍보
7월 13일 2차 회의	1. 참여단체 : 녹색연합(환경), 민예총(문화), 민주노총(노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권규약의국내법적지위, 경제사회적권리 실현의 저해요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고등교육), 민중의료연합(건강권), 사회진보연대(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노동자의 건강권-산업안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운동사랑방(정부보고서에대한전체적인평가, 아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사회보장권),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2. 각 분야별로 준비한 집필 계획 논의(노동권 6,7,8조-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사회진보연대, 아동권-인 권운동사랑방, 건강권-민중의료연합, 고등교육-민교협) 3. 재정 논의 : 본 회기 기간 대표단 제네바 파견 비용은 제외한 예상 비용을 150만원으로 잡고 각 단체 에서 10만원씩 분담하기로 함. 4. 3차 회의까지 9월 사전실무분과회의에 낼 약식보고서(주요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질의) 한글본을 준비하기로 함. 목적 :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 심사를 하기 전에 실무분과회의를 갖고 해당 정부에 보낼 질의목록을 정함. 약식보고서는 사회단체들이 생각하는 주요 문제들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질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 *사회권 규약 기초자료모음집/94-95년 사회권규약 1차 반박보고서 관련 자료 모음집 제작, 각 단체 별로 1권 씩 나눠 가짐.
7월 27일 3차 회의	1. 각 분야별 약식보고서 논의 (노동자건강-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주거권-한국도시연구소, 초중등교육-전교조, 이주노동자의 권리-외노협,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민예총/문화개혁시민연대) · 전체적으로 약식보고 집필 때 고려해야 할 것 ① 모든 분야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 포함되도록 ②질의내용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내용이 많아지면 강조점이 흐려질 수 있음 ③ 각 분야별로 정리한 주요문제를 설명할 때 그 와 관련된 정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간략히 들어가도록 하자.
8월 10일 4차 회의	1. 각 분야별 약식보고서 검토, 논의 2. 일정 확인 8월14일 : 한글본 미제출 단체들 원고마감, 실무위원회 : 제출된 영문본 감수 시작 8월17일 : 모든 단체들 영문본 제출 마감, 실무위원회 : 영문본 감수 계속 8월24일 : 감수 및 최종 수정 완료. 편집. 8월25일 : 유엔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우송 9월4일-8일 : 유엔사회권위원회 사전실무분과회의의 모니터링

<p>8월 10일 -9월 8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보고서 한글본 취합, 검토 · 영문본 취합, 영문본 감수 · 유엔디피(유엔개발계획) 한국사무소를 통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전달하려 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을 뒤늦게 확인. 파스로나 이성훈 사무국장이 9월4일 당일 사전실무분과 위원들에게 전달. · 9/4: 파스로나 이성훈 사무국장이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를 대신해 사전실무분과회의의 NGO발표시간에 약식보고서 발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사전실무분과 회의 내용 : 자료2. pl7-18) · 9/8: 유엔사회권위원회 사전실무분과(Pre-sessional Working Group),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서(List of Issues) 채택
<p>9월 16일 실무위</p>	<p>약식보고서 활동 평가 및 본 보고서 활동 일정 구성</p>
<p>9월 21일 5차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식보고서 활동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각 부문의 주요 사회권 사안을 총괄한 약식 보고서로서의 자료적 가치를 지님 -내부적으로는 인권의 시각 속에 사회단체들이 각 부문의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짐 2)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론, 즉 IMF의 요구사항 및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을 가능하다면 각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풀어나야 함. 이를 위해서는 총론에 대한 깊은 논의와 공유가 필요함. -통계의 배경과 출처를 누락하지 않도록 함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우리 주장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사회권위원회의 1995년 당시 최종견해(권고) 이행 여부를 밝혀줌 -국제기구들(UNDP, ILO 등)의 보고서(위원들이 검토하는 1차 자료가 되기 때문) 중 한국관련 부분 검토,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지적해야 함 -기술적인 문제 : ①사전실무분과회의의 1주일 전에 유엔사무국에 10부가 도착해야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하도록 배포되는데, 이번에는 회의 당일 배포됨 ②집필자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우리 내용을 좀더 충실히 전달하지 못함. 2.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서(List of issues) 검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사회권위원회가 새롭게 추가한 부분 : 국가인권위원회(2항), 난민(6항, 34항) 2)중요하게 다뤄진 부분 : 여성, 이주노동자, 아동 3)미흡하게 다뤄진 부분 : 비정규 노동 문제, 대학교육의 문제, IMF가 행한 역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이뤄지지 않음. <참고>사전실무분과회의의 첫날 NGO발언 토론시간에는 프랑스 출신 Texier 위원이 비정규 노동자의 높은 비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하나 질의서에는 반영되지 않음 4)평가 : 사회적 약자, 여성·이주노동자·아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은 증가하고 있긴 하나 주로 제3세계 국민국가들에 한정되어 있고, 흔히 OECD국가들 수준에서 인권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내 연구가 아직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p><기타의견> -질의내용이 포괄적이라 자칫 한국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만을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결국 사회단체들이 그러한 점에 유념해 본 보고서를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p> <p>-앞으로 만들 본 보고서를 유엔 공식문서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관련 절차를 알아보기로 함.</p>

<p>계속-- 9월 2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본 보고서 집필 방향 및 일정 논의 1)가이드라인 다시 공유 2)IMF영향 하에 이뤄진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권에 미친 영향 : 외부필진(전문 연구자나 활동가)을 찾기로 했으나 인권의 시각으로 위의 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실무위원회의 김진 변호사가 집필하기로 함. 3)새롭게 추가된 부분의 집필 ①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기구공대위에 집필자 선정 요청하기로. ②난민 : 민변 박찬운 변호사의 자문 하에 김기연 간사 집필
<p>10월 12일 6차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민간단체의 참여(발제: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문서는 <활동자료집I>에) 2. 파스로나 이성훈 사무국장과의 간담 : 앞으로의 보고서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IMF와 인권의 연관성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 → 앞으로 IMF와 인권에 관한 부분 집필 시 지역 및 세계적 함의 고려하기로 함. 2)지난 5차 회의 때 '보완해야 할 점들' 정리한 것이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 실제로 반영되어야 할 것, 그 중 특히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 UN 관련 기구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을 우리의 근거로 활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해야 함 → 각 집필 분야에서 관련 유엔기구 보고서 참조하기로 함. 예를 들어 노동권 분야에서는 ILO, 건강권 : WHO, 사회보장 : UNDP, 아동: UNICEF, 난민 : UNHCR 등 3)사안의 우선 순위를 판단해 반드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획득하는 목표를 세우는 등의 전략 기획이 필요 → 앞으로 집필책임자들과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전략을 구상해나가기로. 참고로 내년에 반(反)인종주의 세계대회가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 분야는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4)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인권소위의 논의들 활용 5)사회권위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 주로 제도 언론들을 통해 경제성장의 신화,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회권위원 중 한국 담당을 한국에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초청해 단체와 사회권 관련 현장들을 방문하게 하는 것 제안. → 위원 초청 시 프로그램과 예산을 검토, 추후 논의 결정하기로 함. 이성훈 사무국장이 다른 나라 사회단체들이 위원을 초청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방식이었던지를 알려주기로. 6)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사회권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있음. 동시에 보고서 집필에 필요한 정부 쪽 자료를 확보,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사전 토론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보고서 집필 과정에서 두어차례의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함 ②내용은 주요 분야를 정한 후 관련 부처 집필 담당자를 불러 필요한 자료 공개를 요청, 평가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 ③접촉 창구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④인권사회과 접촉 : 박찬운 변호사, 공문 초안작성, 회람 및 발송 : 민변 김기연 간사 7)언론 홍보 : 보고서 심의, 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등에 대해 한국사회에 알리는 것 중요 → 본 회의 때 언론 기사화 또는 기고 게재를 통한 홍보에 신경을 쓰기로 함 8)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 하에 서면발언문 작성, 유엔 공식문서화 → 공동서면발언문 초안 작성 후, Fian, Habitat, Pax Romana, ICFTU, Amnesty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함. 3개월 전에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공식 문서가 된다는 점 유념해 그 전에 집행되도록 해야 함 9)유엔기구들도 한국 상황에 대해 발언하도록 요청 10)본 회의의 구두 발언 시, 말로만 전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 →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사진파일, 통계 등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미리, 각 집필단체들이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해 가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이 거의 끝날 무렵 구두 발언시간 활용 기획안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준비해가기로. 11)보고서 작성 및 구두 발표 시, 사실 규명 뿐 아니라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박과 논쟁도 준비해야 함.

10월 24일 7차 회의	<p>논의 내용 1. IMF 영향 하에 이뤄진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의 사회권 토론(김진 변호사 발제)</p> <p>2. 정부 쪽 보고서 담당자와의 간담회 추진 경과 보고 및 세부기획</p> <p>-외교통상부 김종훈 과장과 연락 취해 간담회 추진하기로 했고, 공문 발송한 상태.</p> <p>-날짜와 장소는 12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민변 사무실로 제안함.</p> <p><대강의 기획안> 1) 사회권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 : 사회권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 사회단체들과의 협의 계획이 있는지, 보고서 작성 제출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평가 등 2)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초와 사회권 : 정부의 정책기조가 사회권 증진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의 등 3)기타 : 각 분야별로 정부에 질의, 자료 요청하거나 토론하고 싶은 사항</p>
11월 21일 8차 회의	<p>1. 정부 쪽 보고서 담당자와의 간담회 기획 논의</p> <p>○날짜 :12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 민변 사무실</p> <p>○간담의 내용</p> <p>1) 사회권 증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 : 사회권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 및 관련 사회단체들과의 협의 계획이 있는지, 보고서 작성 제출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평가 등</p> <p>2) 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초와 사회권 :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회권 증진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논의 등</p> <p>사전에 정부에 요구할 것 : 1)사회권 정책 담당자의 참석 요청 ; 보고서 작성과정 설명할 수 있어야 함. 구체적 내용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2)토론 주제 보내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p> <p>2. 95년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2000년 위원회의 질의(List of issues),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각 조항별 내용 정리한 자료 공유함.</p> <p>3.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한 원고 초안 논의</p>
12월 5일 9차 회의	<p>1.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질의서(List of Issues) 평가 초안 검토</p> <p>2. 본 보고서용 원고 초안 검토 논의</p> <p>3. 정부와의 간담회 논의 ○경과 :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서 간담회를 1월 중순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 법무부 인권과가 현재까지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1월 중순으로 미룰 경우, 좀더 설득해보겠다는 취지</p> <p>○우리의 입장 : 법무부의 현재 태도는 시민사회와 협의 하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라 볼 수 없다. 일단 1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것을 수락하지만, 만약 그 때도 불참할 경우에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기록할 수 밖에 없다.</p> <p>○간담회의 상 : 사회권 규약에 따른 정부의 보고절차와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는 메카니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것</p> <p>○계획 : 1월 중순으로 연기하는 것을 수락하고, 간담회의 상에 대해 다시 공유하는 공문을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와 법무부 인권과로 발송한다.</p>
2000년 12월	<p>1. 유엔의 질의(List of Issues)에 대한 사회권연대회의의 의견서 발송함 (문서는 <활동자료집 I> 에)</p> <p>-이메일/우편 : 한국담당과 사무국(Alexandre Tikhonov, Paivikki Aaku)</p> <p>2. 서면발표문(Written statement) 초안 작성</p>
2001년 1월	<p>1. 서면발표문 -검토, 수정/영역 -파스라마나의 연서 받아 유엔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접수</p> <p>-Alexandre Tikhonov와 Aaku Paivikki(사회권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잘 받았고, 번역 및 편집에 들어갈 거라는 답신을 받음.</p>
2월 6일 실무위	<p>1. 정부와의 간담회 : 정부 쪽에서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미 기한이 지남.</p> <p>법무부 정한진/이성욱 검사,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에 2월 15일까지 확답이 없으면 간담회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공문 보내기로 함.</p>

--계속 2월 6일 실무위	<p>2. 본 보고서용 원고를 실무위원들이 나눠서 검토하기로 함.</p> <p>김선수, 김진 : 노동권,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산업보건, 초중등 교육</p> <p>박찬운 : 난민,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 평가, 총론</p> <p>이상희 : 장애우, 여성, 환경권</p> <p>김기연 : 건강권, 주거권,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p> <p>이주영 : 사회보장권, 아동, 고등교육</p> <p>3. 25차 회기 참가 제정 마련에 대해 논의</p>
2월 20일 10차 회의	<p>1. 서면발표문(Written Statement) 분량 줄여서 재발송 :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p> <p>2. 정부와의 간담회 : 1차 12월, 2차 2월 20일로 두차례나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법무부의 거부로 간담회 무산되었음. 본 보고서의 '규약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에 이러한 사항을 명기하기로 함.</p> <p>3. 25차 회기 참가 활동에 대해 논의 :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올바른 심의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사회단체들이 보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 발표 2)한국정부의 발언에 대한 반박자료를 현장에서 준비 3)한국담당 위원 개별 면담 4)참가 보고서 작성 5)국내언론에 기사 송고 6)위원들과 별도의 회의(간담회)</p> <p>4. 참가 제정에 대한 논의 :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원을 요청한다.</p> <p>5. 본 보고서용 원고 논의</p>
3월 13일 실무위	<p>1. 심사회의의 참가 대표단이 사전 준비해야 할 것 검토</p> <p>-발표문 및 함께 보여줄 시청각 자료 준비 -요약문(간략한 설명, 질의, 권고) 준비</p> <p>2. 참가단의 숙소, 제네바에서의 일정 등에 대해 파스라마나와 협의</p> <p>3. 본 보고서용 원고 최종 검토</p>
3월 22일 실무위	<p>1. 본 보고서 영역 현황 확인</p> <p>2. 25차 회기 참가 활동 일정 점검</p> <p>3. 참가자 논의</p> <p>4. 요약문에 들어갈 핵심주제 토론</p>
4월 6일 실무위	<p>1. 제네바 활동 일정 :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일 4월 30일, 5월 1일로 최종 확인됨.</p> <p>-항공권 예약, 숙소 예약</p> <p>2. 참가자 최종 확정 :</p> <p>-전 기간(민변 김기연,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p> <p>-부분 참여(민변 박경신 :21일-26일, 민변 김선수 : 28일-5/3일)</p> <p>3. 정부 쪽 동향 : 외교통상부가 간담회를 새로이 제안해옴. 4월 13일 금요일 4시.</p> <p>4. 보고서 편집의 원칙</p> <p>-각 단락 별로 항 번호 달기(관련 주제에 해당하는 정부 보고서의 항 번호 추가)</p> <p>-표 번호 순서대로 다시 매기기, 별도로 표 색인 만들기</p> <p>-사회권 조약 조항 별로 글 순서 재 정리</p>

<p>--계속 4월 6일 실무위</p>	<p>5. 발표문 준비에 대한 논의 1)제한 시간은 평균 15분 2)발표 내용과 관련해("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활동에의 NGO참여" E/C.12/2000/6) -정부 보고서에 관한 견해를 밝힘 -보고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협의나 협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림 -민간단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의 설명과 토론 -해당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관련해 일반적인 동향을 알림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제시 -규약의 이행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 -규약의 이행에서 정부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긍정적인 예를 보고 3)발표문의 체제(사회권위원회 문서 E/C.12/2000/6와 95년 1차 발표문을 참조하여)</p>
<p>4월 10일</p>	<p>1. 본 보고서 발송 : 유엔 사회권위원회 사무국에 25부(위원 18부, 사무국 3부, 통역사 4부) 팩스로마나 2부, 한국 담당 위원에게 1부 발송</p>
<p>4월 19일 11차 회의</p>	<p>1. 제네바 참가단 일정 공유 4월 23일 월요일 : 제25차 사회권위원회 첫날, 민간단체 발표 4월 30일-5월 1일 :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모니터링 참석기간 중 : 유엔 사회권위원들 개별 면담, 정부 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 국내언론에 홍보활동 2. 발표문 사전 시연 : 시연자 박경신 변호사 3. 특별사안 : 4월 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관련 제네바 참가단의 활동 -제네바 체류 기간 동안 '세계고문방지단체(OMCT)',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법률가위원회(ICJ)' 등을 방문, 최근 경찰폭력을 담은 비디오 및 인권단체들의 성명서와 어필을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 -1995년 당시 위원회가 우려했던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변화를 촉구할 것을 사회권위원회에 요청. 4. 기자간담회 기획안 검토 · 목적 : 기자간담회 자체에 대한 기사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유엔사회권위원회 기간 중 '사회권연대회의'의 활동과 한국정부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국내에 알리기 위한 사전 설명회의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23 '사회권연대회의'의 발표, 4/30-5/1의 정부 보고서 심사, 5/11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권고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질 수 있도록 함. · 시간 :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5. 후속활동에 대해 논의 : -5월 11일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가 발표되면 5월 14일 월요일 쯤 '사회권연대회의' 참여단체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후 보고서와 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담회 진행 -2차 사회권반박보고서 활동 총 자료집 제작 6. 추가 재정 분담에 대한 논의 : 사회권위원회 참가 경비 지원과 후속 활동 재정 마련을 위해 각 참여단체에서 5만원 씩 추가 분담비를 내기로 함. 7. 각 언론사 사회부에 기자간담회 참가 요청서를 보냄. (한겨레, 동아, 한국, 연합, 문화, 노동일보, 한겨레21, 시사저널, 월간말, 오마이뉴스, 신동아, 시민의신문, 장애인복지신문, 복지연합신문)</p>
<p>4월 20일</p>	<p>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자료는 <자료4 언론홍보활동 p27-30>에)</p>

<p>4월 21일 -5월 3일</p>	<p>유엔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기 참가 활동: 제네바 활동 일지는 <자료3 p19-26>에</p>
<p>5월 3일 -10일</p>	<p>1. 참가 활동 정리 2. 사회권위원회 심사 회의록 정리 3. 언론사에 기고할 참가기 집필(한겨레21, 시민의 신문)</p>
<p>5월 11일 12차 회의</p>	<p>1.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 검토 : 각 참여단체,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 최종견해 및 권고는 <활동자료집 I>에 2. 후속 활동 논의 1)최종 견해 및 권고 기사화 :13일 일요일 보도자료 배포, 14일 월요일자 2)정부에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획안 :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 -참석자 소개 -유엔사회권위의 최종견해 및 권고의 배경(사회권위원회의 심사논의에 기반해) -정부에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준비 : 성명서 작성(김진 변호사), 언론사 기사 조직(인권운동사랑방) 3)참여 단체 및 관련 단체들,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개별 성명서 발표 4)기자회견 후 집필 책임자 회의</p>
<p>5월 12일 -14일</p>	<p>-최종견해 번역 -기자회견문 작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언론사 연락</p>
<p>5월 15일</p>	<p>○장소 : 느티나무 카페 ○때 : 10시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배정배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낙돈 교수, 민변 김선수 변호사, 민주노총 권두섭, 노동건강연대 최은희, 참여연대 이은아,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사회진보연대 구미영 등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2. 제네바에서의 심사 과정을 통해 본 최종견해(권고)의 배경 설명 : 김선수 민변 변호사 3.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배정배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 4. 질의/응답 ○집필책임자 회의 : 후속 활동에 대해 1.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계 부처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함. : 주요 우려사항과 제안 및 권고 내용, 그리고 내일(수) 보내드릴 녹취록에 기반해 정부의 이행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①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부처에 보내고 ②사회권 연대회의 전체적으로 모아 포괄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의 분량을 조절해 청와대 및 사회권 이행을 총괄 담당해야 할 곳에 보내기로 함. 2. 각 참여 단체 기관지에 필수적으로 최종견해의 내용을 홍보 게재한다. 3. 해외단체들에 한국에 관한 이번 '최종견해'를 홍보한다. 이외에도, 참여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획하는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어도 '사회권연대회의' 명의 아래 후원하거나 부분적으로 함께 결합할 수 있다.</p>

5월 15일 -5월 말	1. 공개질의서 발송 보고(공개질의서는 <활동자료집1>에) ○발송 일자 : 5월 25일 금요일 ○수신처 : 김대중대통령,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후속 활동 : 이번 주 중 수신 여부 확인 및 답변 촉구 예정. 2. 해외단체들에 한국에 관한 이번 '최종견해'를 홍보함.
6월 11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력 탄압을 중단하고 사회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6월 14일 13차 회의	1. "A규약 제2차 이행보고서 최종평가서 이행을 위한 정부-NGO간 합동회의"에 관한 건 5. 25 :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6. 2 : 정부, 국내 조치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 개최 6. 14 : 합동회의 참석 요청 공문 받음(별첨) 정부의 합동회의 제안 내용 : 6/2일 회의 결과 알림, 국내조치 이행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다. 1) 참석 여부에 대한 논의 : 6월 2일 회의결과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엔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고자 논의됨. *참석 전, 6월 2일 회의 결과 및 참가자 명단 공개 요청하기로 함. 6/27일 회의도 공개 요청하기로 함. 2) 참가자 : 일정한 무게를 실을 수 있도록 단체 내에서 논의해 참여하기로 함. 3) 회의 때 제기할 내용 ▲공개질의서의 가,나,다,라,마 항에 대한 답변 요청 ▲정부의 조치 이행 계획 : 6/2일 회의 내용 → 회의결과를 미리 받는다면 그 내용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안 중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배치되는 부분 시정 촉구 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및 파업에 대한 지나친 제한, 공무원/교수 노조 인정 문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인상 문제 → 6/27 전에 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한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은 간략히 한다. 유관 단체는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 사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안할 것이 예상되는 '연례평가회'에 대한 의견 표명 →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3가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해 27일 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연례 평가회는 뒷북치기 심상이기 때문에, 권고가 배치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2)정부의 이행 프로그램을 미리 밝히도록 하고, 1년 후에 그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로 연례평가회를 받아들이자. 3)NGO와 무관하게 정부는 자체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NGO는 공동평가회로 제도화할 필요 없다. 초청할 경우,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2. '사회권규약제2차 반박보고서연대회의' 조직 진로에 관한 건 -연대회의를 해소할 생각이었으나, 6/27 회의를 비롯해 그후에도 공동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회의를 느슨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칭을 '사회권연대회의'로 변경하고 연락사무국 기능을 둔 채 느슨하게 유지하자는 의견.

6월 22일	사회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 발송 내용 :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검거령이 내려졌고, 많은 구속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사회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
6월 27일 정부와의 간담회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817호 ○참석자 :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선수변호사, 김기연간사), 사회진보연대(이종희 사무처장),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 이주노동자지부(조대환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서준식대표, 이주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종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최철호 대외협력실장), 한국도시연구소(서종균 연구원) · 정부 쪽 참석자 : 청와대 신필균 시민사회비서관, 외교통상부 박경서 인권대사, 강경화 국제기구심의관, 마영삼 인권사회과장, 오낙영 인권사회관서기관, 이승범 인권사회과 사무관, 법무부 인권과 민만기검사, 노동부 최성요소서관(국제협력담당관실), 보건복지부 이석규 서기관(국제협력담당관실), 여성부 조윤혜 행정주사(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자치부 이재영 서기관(복무조사담당관실), 건설교통부 유성용 사무관(주택정책과), 문화관광부 정영석 사무관(문화교류과), 통계청 허진호 사회통계과장, 교육부 김명구 서기관(국제협력담당관실) ○협의 결과 (간담회 자세한 내용은 <자료8 p76-81>에) -각 정부 부처 내에서 이 업무의 중요성이 인지되도록 박경서 인권대사와 신필균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분야별로는 일상적으로 각 부처의 담당자가 문제 및 이행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협의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약 6개월에 한번 씩 갖도록 한다. -다음 회의는 각 부처에서 이행 프로그램이 성안되고 평가가 어느정도 가능한 시점으로서, 11월 28일 수요일 오전에 갖는다. -이행에 있어 예산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다음 회의에 참여토록 요청한다. -회의를 기획, 준비하는 것은 법무부의 인권과, 외교통상부의 인권사회과, 사회권연대회의가 한다. 사회권연대회의에서의 준비 담당자는 사회권 연대회의 내 협의를 거쳐 추후에 통보한다.
6월 27일 14차 회의	1.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연대회의 향후 진로에 관한 건 안건 : ①연대회의를 해체할 것인가 ②명칭을 '사회권연대회의'로 변경하고 연락사무국 기능을 둔 채 느슨하게 유지할 것인가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와 전교조의 최철호 대외협력실장이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정부가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②의 의견을 밝혔고, 참여한 다른 단체들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곧 설립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인권연대체가 만들어질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종합적으로 인권상황에 대응하는 상설기구로 전화될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 사회권연대회의가 상설기구 내에서 사회권을 담당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참여여부는 실제 제안되었을 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료1> 본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자료1> 본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1. 체제

가. 서론과 각 조항별(제6조-제15조)로 정리

나. 서론

1)도입 (작성단체 소개와 작성 경위 및·의의)

2)정부보고서에 대한 종합적 평가

3)규약실시에 있어 고려 요소와 어려운 점 (1996-2001년 상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IMF체제의 영향

○분단과 국가보안법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

○기타 요소들

4)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다. 각 조항별

1)제6조(Article 6)부터 제15조(Article 15)까지

2)쟁점별 정리

a. 결론과 권고

b. 국제인권법적 근거 및 최초보고서 검토 시 사회권위원회의 지적사항

c. 정부보고서의 내용 요약 및 평가

d. 현 상황 및 문제점

*b:사회권위원회 1995년 당시 최종견해(권고) 이행 여부를 밝혀줌

국제기구들(UNDP, ILO등)의 보고서(위원들이 검토하는 1차 자료가 되기 때문) 중 한국 관련 부분 검토.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지적

c: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우리 주장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d:통계의 배경과 출처를 반드시 기재.

2. 한글 원고 작성 시 유의사항

1) 보고서는 외국인이 읽을 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한다. 즉, 한글 원고가 번역된다는 점을 고려해 번역이 용이하도록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2) 간단명료해야 하며 가급적 근거가 되는 통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3) 고유명사의 경우, 이미 정해진 영문번역어가 있으면 반드시 명기한다.

4) 인용하려는 부분 중 영어원문이 있는 경우, 그대로 활용

<자료2> 사전실무분과회의 보고

<자료2> 사전실무분과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보고 (2000. 9.4)

일시 : 2000년 9월 4일 월요일

작성 : 팍스로마나 사무국장 이성훈

*사전실무분과회의: 특정 정부의 본 보고서 심사 회의 전, 해당 정부에 대한 질의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

큰 회의장에 5명의 위원과 서너명의 유엔 인권사무국 직원, NGO 대표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작할 때는 대체적으로 조출한 분위기, 그러나 발표를 마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질문에 청문회같은 분위기가 연출. 다른 나라에 대한 NGO 발표가 없어 더욱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질문의 내용과 수를 볼 때 위원들의 한국사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류언론이나 정부보고서와는 달리 최근의 한국의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매우 다른 시각을 보여준 NGO의 보고서를 접한 대다수의 의원들의 얼굴에는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원 발언의 대부분이 보고서의 특정 이슈에 대한 보충설명과 자료요청, 특히 사실확인을 위해 보고서에 인용된 여러 통계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사실확인 질문 이외에 전체적으로 보아 두가지 쟁점이 질의응답을 통해 드러남. 1) IMF의 구조조정이 한국에서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부의 대처방안의 인권의 관점에서 올바른,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최근의 위기 하에서의 경사문권리의 후퇴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2) 한국경제가 호전되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데, 과연 그러한가? NGO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주된 걸림돌이고 어떠한 대안적인 정책이 가능한가?

질의응답 마지막에, 국제 인권단체인 팍스로마나(Pax Romana)의 인권 자문위원(adviser)인 인도의 조셉 라지쿠마씨는 IMF위기 하의 한국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면서, "1) 엄청난 인권침해를 초래한 위기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국제적으로 있었는가? 즉 경사문권리 영역에서의 불처벌(Impunity) 문제, 2) IMF의 구조조정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경사문권리의 내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3) 경사문권리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것인가? 즉 다른 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대다수 위원의 공감하는 모습.

회의가 끝난 후 위원을 대표해서 모하메드 사미르 아메드 의장은 5개국에서 유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발표까지한 한국의 NGO에게 감사하다는 발언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진 요르단의 사디씨는 회의 후, 사실 여러나라의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경사문의 침해 및 퇴보에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보고서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 알렉산더 티코노프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담당국장,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도 한국 NGO의 보고서는 위원회와 NGO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칭찬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 정부와의 대화, 언론을 통해 보고서 내용 - 정부와 NGO 모두 -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 그리고 본 심의에 NGO가 보충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함. 이후 위원들은 NGO의 자료와 자체 심의를 바탕으로 예비질문서(list of issues) - 보통 30-50 항목 - 를 다음주에 한국정부에 보내며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되어있음.

Report Proceeding.

Before beginning, Lee met with Alexandre Tikonovich and gave the summery report and the oral statement with the appendix - recommended questions. He distributed it among the members and interpreters.

At 10:45 am 1) The Committee elected the chairperson - Mahomed Samir Ahmed (Egypt) The five members of WG are Ivan Antanovich (Belarus), Mahomed Samir Ahmed (Egypt), Walid M. Sa'ad (Jordan), Philippe Texier (France) and Javier Wimer Zambrano (Mexico) The chair was assisted by Mr Alexandre Tikonovich, Secretary from the OHCHR and Ms Paivikki Aaku, assistance secretary from the OHCHR.

Then, he invited UN specilized agencies but no presentation. Only two observers from FAO And UNHCR were present without intervention. So chair invited NGO. Out of five countries in the list, namly, Korea, Finland, Panama, Bolivia and Ukraine, only rep of Korean NGOs and Pax Romana were present. Lee Seong-hoon read the prepared statement for 15 minutes and was followed by more than 10 questions from all members. There was no other presentation so almost one hour was devoted to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Mr Lee and Committee member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questions raised by the members.

- 1) Wimer, on recovery and employment, disparity between government data and NGO data 1997-2000 explanation called for.
- 2) Sadi : sweeping remark on industrial safety measure, child labou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sks for more specific explanation and substantial figures. Also the linkage between deregulation of industries and industrial safety measure.
- 3) Chair : Right to housing, hot it has evolved. Need more specific data. What has been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 4) Antanovich: direct repurcussion of IMF policies and SAP, more explanation on social sucurity
- 5) Antanovich : more specific explanation on the impact of IMF restructuring during the crisis and recovery
- 6) Chair : restructuring of economy and IMF condition, has it had any effect?
- 7) Sadi : whether South Korea had any choice faced with IMF restructuring in 1997?
- 8) Texier : about temporary workers, disturbing given high percentage. Also about 50 hours working hours per week, need specific source of information.

<자료3> 제네바 활동 일지

<자료3>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제네바 활동 일지

날짜 : 2001년 5월 11일 금요일

참가자 : 김기연 간사(4/22-5/3), 김선수 변호사(4/28-5/3), 박경신 변호사(4/22-4/25), 이주영 (4/22-5/3)

*대: 대표단

● 4월 22일 일요일

- 발표문 준비
- 위원들에게 배포할 요약문 교정

● 4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유엔인권센터 도착, 정문 경비실에서 배지를 받음(미리 사무국에 참가자와 참가기간을 통보했기 때문에 가능)
오후 3시-6시 민간단체 발표시간	<p>-구두발표문 및 본보고서 요약문, 수정자료 위원들에게 배포</p> <p>-한국사회권연대회의의 발표는 4시 30분 경</p> <p>-발표자 : 박경신 변호사</p> <p>-발표시간 10분 (발표를 신청한 단체가 10개 이상이었기 때문에 발표시간은 7분으로 제한되었다. 한국의 경우,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내용을 한 사람이 발표한다는 것을 감안해 10분이 주어졌다. 애초에 발표 시간을 15분-20분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용을 급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표할 수 없었다.)</p> <p>-기제 사용 가능 여부, 조명 문제로 약간 시간이 지체됨</p> <p>-과워포인트를 이용해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한 발표는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p> <p>-과워포인트 용의 시각자료들은 유엔인권센터의 이완희 씨의 도움을 받아 위원들에게 배포함</p> <p><대표부의 반응></p> <p>제네바 대표부에서 3명 정도가 회의장에 나와 발표를 지켜봤다. 대우차에 대한 경찰폭력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 긴장. 본부(서울)에서 신경이 곤두서있다고 함. 23일 '사회권연대회의'의 발표문을 본부로 보내 30일-5/1일의 심사에 대비해 준비해오라고 했다고 함.</p> <p><참고사항></p> <p>①발표문을 준비할 때, 구체적인 사례, 실제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각 현실들을 구성해 보는 것 필요(인권센터의 이완희 씨 조언, 실제로 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규현씨 사건, 금융노조 사건, NLD난민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p> <p>①기제를 사용할 경우, 기술실에 분명히 사전통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p> <p>②제한되는 발표시간을 고려해 발표문을 신중적으로 준비해야 함. 충분한 내용의 발표는 오히려 사전실무분과회의(Pre-sessional group meeting) 때 기획하는 것도 고려해볼직 함.</p>
저녁식사	대표부의 대사, 인권 분야 참사관, 검사, 노무관 등과 저녁 식사

● 4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유엔인권센 터 이완희 씨	-개별 면담이 필요한 위원들을 알려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 및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이슈만을 압축 정리하는 자료 배포할 것을 제안 -사회권위원회, IMF 구조조정에 대해 관심 많다. IMF 구조조정이 미친 영향을 부각.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복했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 필요
오후 2시 ILO 사회 권위원회 담당 Martin Oelz	1)한국이 성공적으로 실업을 극복했다는 ILO의 평가에 대해 문제제기(대) 2)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Convention No. 81, 100, 110과 연관지어 -여성에 대한 차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위반 -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한국 상황과 관련된 조약 비준 여부와 비준한 조약의 이행 여부를 문제삼는다. -한국정부가 가입한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제관습법으로서 또는 Soft Law로서 ILO의 권고를 한 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가입하지 않은 조약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도록 중용. -ILO도 한국정부가 비준한 조약에 대해 그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 인권, 사회단체들이 이 과정에 서 많은 정보를 주면 유익하다. 4)대우의 경찰 폭력에 대해 비디오와 인권단체들의 성명서를 전달(대)
2시30분 Waleed Sadi (요르단)	1)알고 있었던 바와 달리, 한국담당 위원이 아님을 확인 2)IMF 구조조정이 한국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대). 이에 대해 Sadi 씨는 IMF와 World Bank가 국제인권법들을 무시하고 있어 사회권위원회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 음을 설명. 3)개인적인 관심은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건강권, 환경문제 등 -이와 관련, 한국에서의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주의를 환기(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규약을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사디 씨가 지적. 가입국은 위원회의 recommendation을 단순한 권고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 위원회에서는 'call', 'require'와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4)교원: 파업권이 없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설명(대) 5)아동매춘의 문제에 대해 6)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가 사회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 라고 강조(대)
3시-6시 배내주엘라 심사 참관	1)다른 위원들과 개별 면담 약속을 잡기 위한 목적 2)위원들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성향 파악.
밤 참가단 평가	1)발표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위: '발표' 참고사항에 기술) 2)한국정부 대표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토의.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에 대해 논의. 3)'사회권연대회의' 평가서 작성을 통해 다음에 이뤄질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공유.

• 4월 25일 수요일 (김기연, 박경신, 이주영)

9시40분 Texier (프랑스)	1)한국 사회권 상황의 주요 문제를 간략히 설명(대) -IMF 구조조정이 사회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으로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설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교육, 건강, 주거의 문제, 단 결권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2)이외에도, 아동노동, 소득격차, 4/10일 사법명령 집행 중 경찰폭력이 발생한 것 등에 대해 관심 표명
9시 50분 Ahmed (이집트)	1)한국,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아직 뒤떨어진다고 평가. 2)주요 문제를 통계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대) 3)공무원 노조, 대학교수 노조가 불허되는 문제, 화교 문제, 국적법 문제,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관 심 4)한국보고서 심사가 이뤄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함
오후	위원들 개별 면담 시 한국 사회권 상황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간단히 토론

• 4월 26일 목요일 (김기연, 이주영)

10시 -오후 1시	온두라스 보고서 심사회의 참관
2시 45분 -3시 Ceausu (루마니아)	-사회권 주요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대)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냄 : 한국이 IMF 구조조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위기 극복한 것이 사 실 아니냐는 견해, 한국의 시위대가 좀 폭력적인 것 같다는 시각 -소득격차가 해마다 벌어지는 현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대) -무엇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 또 공권력이 동원하는 폭력의 문제를 제기.(대)
6시30분 Paul Hunt (뉴질랜드)	1)사회권 주요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대) 2)다른 사회권위원들의 관심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줌 Texier(프랑스) : 노동권, 노동조건, 노동기본권, 난민, 이주노동자 Eibe Riedel(독일) :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건강권, 난민 Romero(에쿠아도르) :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난민 Pillay(모리셔스) :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주거권 Paul Hunt(뉴질랜드) : 교육권, 가정폭력, 빈곤, IMF 구조조정과 사회권규약의 문제 3)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때, 한국정부가 사회권 규약 상의 의무를 고려했는지에 대해 관심 4)교육권과 관련,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드는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을 설명(대) 5)이밖에도 교원의 지위, 학문의 자유, 인권교육, 교과과정 등에 대해 관심 6)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교사 연수 과정에 인권교육이 없음을 을 정부 대표에 질의할 수 있을 거라고 함. 7)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읽고 심사에 임한다고 성실성을 드러냄.

****간담회 주최와 관련**

간담회 주최보다는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각 관심사에 따라 주요한 내용을 짚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따라서 별도의 간담회는 주최하지 않기로 함.

● 4월 27일 금요일 (김기연, 이주영)

<p>오전9시 Nathalie (OMCT)</p>	<p>OMCT가 하는 일들 -고문에 대한 긴급 어필 고문 피해자에 대한 재정, 의료, 법률 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 : 조약심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y) 관련 활동 -아동 : 긴급성명, 보고서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 : 조사단 파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폭력과 상호 연관성에 착목 (예: Street children, 노동조합 활동) 긴급성명서, 위원회에 보고서, 조사단 파견</p> <p>한국 인권상황 관련 -국가보안법 -감옥 -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계속 공급받고, 후속 활동. -그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에도 관심. -이주노동자 -아동권 관련, 11월에 핀란드에서 아동에 관한 OMCT 차원의 국제회의의 열림 아동권 담당자 : Roberta Cechelh : rc@omct.org</p>
<p>오후 4시 Romoro (에쿠아도르)</p>	<p>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제15조)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문화적 활동을 침해 : 레드헌트, 모내기 등 -한미 자유협정 체결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폐지 위협</p> <p>난민문제 : 지위 인정 심사의 문제, 사회경제적 권리보장의 문제 학문의 자유 관련 : 교수 제임용제도가 갖는 문제에 대해 설명</p>

● 4월 28일 토요일 (김기연, 이주영)

1) 위원회의 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 반박자료 준비

● 4월 29일 일요일 (김기연, 김선수, 이주영)

1) 위원회의 list of issues에 대한 정부의 추가 답변 반박자료 준비

2) 영역

● 4월 30일 월요일 (김기연, 김선수, 이주영)

<p>오전10시30분 WARC 세계개혁교회 협의회 박성원목사</p>	<p>1)사회권 보고서 -잘 쓰여졌다는 평가, 동구유럽에서 세계화 관련 회의를 할 때 자료로 소개할 것이라고 함.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서두에 좀더 강하게 기술했으면 좋았었다면 아쉬움 표함. -보고서 추가로 보내주기로 함.</p> <p>2)금융노조, 주택은행, 국민은행 파업 관련 실행 신고 받은 노조원 구명 운동에 대한 논의 : 한국 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어필이 오면 WARC/WCC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가능</p>
<p>오후 1시 Malinverni (스위스)</p>	<p>-난민: 지위 인정 오직 1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 전혀 안됨. -건강권: 본인부담금 문제(의료보험, 의료보호), 의료기관(사기관이 너무 많다)</p>
<p>2시 45분 Pillay (모리셔스)</p>	<p>-노동권 : 비정규노동자, 공무원/교원 단결권, 경찰폭력 -주거권 :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 -사회적 약자 : 이주노동자, 난민</p>
<p>오후 4시-6시 한국보고서 심사</p>	<p>회의 시작 전, 정부의 답변서에 대한 민간단체의 반박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 (자료를 배포할 때는 위원들의 책상 위에 그냥 놓아두지 말고 위원 한명한명에게 짚막하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꼭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좋다.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많다.)</p> <p>한국정부 보고서 심사(조약의 1조-5조 관련) 회의 진행은 -정부대표의 모두발언 -위원들의 모두발언에 대한 코멘트 -관련 조항에 대한 list of issues 답변을 정부대표가 간략히 발제 -위원들의 질문</p>
<p>저녁 7시-9시</p>	<p>저녁 식사 (강은경, 김기연, 김선수, 라지쿠마(Pax Romana), 이성훈, 이주영) 회의발언 내용 검토</p>
<p>저녁 9시 ---</p>	<p>최종견해 초안 작성(김선수 변호사), 검토 및 영역(김기연, 이주영)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자료 제작 : 사회권 관련 사항 및 공대위 성명서 번역 (이성훈) 이주노동자 관련 논쟁지점 토론 (강은경, 김기연, 이주영)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보호지침 :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 -자녀 교육권 : 교육부 지침. 법무부 반대하고 있다는 점</p>

● 5월 1일 화요일 (김기연, 김선수, 이주영)

<p>오전 9시 Riedel (독일)</p>	<p>1)건강권 -본인부담금(대) -에이즈, 약물 보급의 문제 등에 대해 관심 보임. 일반논평 43번, 44번 정부의 의무 참조할 것 조언 -감옥에 의료인력부족(대) 2)사회보장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효성(대) -국민기초생활보장 : 빈곤층 숫자는 늘었지만 수급자 숫자는 비슷(대) 3)여성 -모성보호 관련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법안 유예된 문제(대) 4)2002년 3-4월에 회의 참석 차 한국에 옴. 세미나 개최 가능함. 5)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논평, 사회보장권에 대한 일반논평 곧 만들어진다고 함. 6)정부 추가답변서에 대한 반박자료(Comments)만들 때 권고 질문까지 포함하면 더 좋겠다고 조언해 줌. 7)회의 진행 중, 정부 대표에게 질문하면 좋은 것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함.</p>
<p>오전 9시40분 Texier 프랑스</p>	<p>노동권 전반에 대해 풍부하게 이야기함. 1)실업률 다소 낮은 편, 하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수 지나치게 높다. 비정규 노동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질문(텍시에), 설명 2)최저임금제 : 전면 확대됐다. 액수의 수준이 어떠한가 질문(텍시에),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 수혜률이 낮다고 설명 3)공무원, 교원, 교수 노조결성권, 파업권 4)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 양규현, 금융노조, 대우차 등 구체적 사례 설명 어떤 파업을 정치적 파업,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냐고 텍시에 질문,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파업,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설명. 그러한 파업이 불법이 되어서는 안된다(텍시에) 5)노동시간과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 : 노동시간 너무 길다, 법정공휴일 너무 짧다.(텍시에)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할증률 인하를 연동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p>
<p>10시-1시 한국보고서 심사 회의</p>	<p>회의 진행 -전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위원들의 코멘트 -6,7,8조 관련 정부의 발제/위원들의 질문/정부 답변/위원들 코멘트 -9,10조 관련 정부 발제/위원들 질문 그밖에 진행된 일들 1)10시 10분 경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텍시에, 마티노프, 헌트에게 전달. (*자료가 회의 시작 전 도착했으면 모든 위원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을 것) 2)필레에게 모성보호법 관련 정부대표에 질문할 내용 전달 3)리델에게 건강권, 사회보장권 관련 정부대표에 질문할 내용 전달 4)폴 헌트가 한국정부 National Plan of Action 있는지 질문, 없다고 답. 5)말린베르니가 보건의료예산에 대해 질문, 답해 줌.</p>

<p>오후 1시 말린베르니</p>	<p>건강권에 대해 다시 집중적으로 이야기, 정부대표에게 질문할 내용 공유 -의료기관이 '사' 부문에 편중 -보건의료예산이 낮음 -본인부담금이 너무 높음 -난민에게 의료혜택 없음</p>
<p>오후 1시 10분 정부대표단과 점심 식사</p>	<p>정부 대표단 (박경서 대사, 정달호·인권사회국장, 허강일 서기관) 인권단체 (강은경, 김선수 변호사, 박성원 목사, 라지꾸마, 이성훈, 이주영) 유엔인권센터 (이완희)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대한 칭찬, 정부에서 참조해야 할 거라고 평(이완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대화를 통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박경서 대사) -우선, 이번 최종견해 및 권고가 어떻게 정부에 의해 이행되는지가 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주영) -정부와 민간단체들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한 공동 작업은 어려울 것. 따라서 서로의 관점과 입장을 먼저 확인하면서 좁혀 나가려는 노력부터 필요하다는 의견(박성원 목사)</p>
<p>2시 30분 Pillay (모리셔스)</p>	<p>주거 빈곤에 대해 질문 : 비닐하우스 문제, 노숙자 등에 대해 설명해 줌.</p>
<p>2시 40분 Paul Hunt (뉴질랜드)</p>	<p>교육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함 -유네스코 보고서, 가족의 부담 너무 큰 것에 대해 질문(폴 헌트), 설명 -공/사 교육비 차이 심각하다는 점 공유 -대학등록금이 높아 저소득층 접근에 어려움 -인권교육 : 교사 연수 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 -학문의 자유 -교사의 노조권, 파업권에 대해 오전 회의에서 지적됐는지 질문(폴 헌트)</p>
<p>3시-6시 한국보고서 심사회의</p>	<p>회의 진행 -9,10조에 대한 정부 답변 -11,12,13,14,15조에 대한 정부 발제/위원들 질문/정부 답변 그밖에 -말린베르니에게 난민 사례(버마 NLD) 전달</p>
<p>6시: 회의종료</p>	<p>-한국 NGOs의 최종견해 초안을 위원들에게 배포 (평가 : 위원들로부터 매우 훌륭한 작업이란 평가를 받음. 하지만 정부 보고서 심사 첫날, Comments on the replies of the Government to the list of issues와 NGOs' Draft of Concluding Observation을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 -회의 때 정부 답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다시 위원들에게 전달 폴 헌트에게 인권교육, 말린베르니에게 난민 의료 혜택 관련 이야기.</p>

*6시 30분 - : 박성원 목사님 집에서 저녁 식사 (IMF도 한국의 사회권 상황과 관련해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금융, 경제관련 국제기구들에 강제력 발휘할 수 있어야 함 등에 대해 이야기)
*9시 --- : 5월 1일 심사 내용 재정리, 평가

● 5월 2일 수요일 (김기연, 김선수, 이주영)

1) 오전 9시 45분

- 최종견해 민간단체 초안 못 받은 위원들에게 재 배포.
- Pillay에게 정부의 1일 답변과 관련, 강제철거 시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대책에 대해 다시 이야기. Rattray와 사회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점과 철학에 관해 간단히 토론.

2) ICJ (국제법률가위원회) : 대우차 비디오 및 경찰폭력 내용 전달, 사회권반박보고서 전달. 특히 박훈 변호사 관련 법률가에 대한 위협으로 설명. 자료검토 후 대응을 모색하기로 함.

3) ICFTU (국제자유노련) :

- 대우차 비디오, 사진 전달, 사회권 반박보고서 전달.
- 제네바의 국제자유노련은 주로 유엔 인권기구, ILO, OECD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음.
- 전달한 비디오와 사진은 다음 ILO 총회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함.

4) 저녁 6시 :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한 검사와 저녁 식사 (김기연, 김선수, 이성훈, 이주영)

- 앞으로, 법무부 인권과에서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해 연구할 것임.

5) 저녁 9시 : ILO의 이상현 씨 만남.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 : 노동시간 연구. 이와 관련, 가을 무렵 한국 방문 예정
- 한국 노동운동의 ILO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 한국의 노동 이슈는 매우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데 ILO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복수 노조 금지 사안의 경우,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람들 만나 직접 전달하지 않고 후속 작업도 하지 않는 것 문제
- 제소할 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기술해야 함.
- ILO 보고서 검토, 문제점 있으면 ILO에 수시로 문제를 제기하면 반영됨.
- 보고서 및 ILO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 질문이나 요청사항 있으면 이메일 보내면, 수신자가 반드시 답하게 되어 있음(내부규정) 특히 사무총장 cabinet@ilo.org로 보내면 더욱 효과적.
- 가을 경에 한국 오면 관련 단체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함.

● 만남 사람들

- 위원들 : 리델(독일), 필레(모리셔스), 말린베르니(스위스), 사디(요르단), 아메드(이집트), 맥시에(프랑스), 세우수스(루마니아), 로메로(에쿠아도르)
- 유엔 전문기구 : ILO 마틴, UNHCR 앤 앙팡뜨르, ILO 이상현
- 인권단체 : OMCT(세계고문방지단체) Nathalie Mivelaz, ICFTU(국제자유노련) Dan Cunniah, Centre for Economic & Social Rights의 Lucy Mair, WARC 박성원 목사, APT 세실리아,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마가렛 로젠탈(아시아담당: Ian Seiderman)
- 정부관계자 : 박경서 인권대사, 제네바 대표부(대사, 윤병세 공사, 신길수 참사, 한상범 검사, 이성기 노무관), 외교통상부(정달호 인권사회국장, 정경화 국제기구심의관) 여성부(조운애, 이기순), 법무부(인권과 문만기)

<자료4> 언론 홍보활동

<자료4> 언론 홍보활동

1. 기자간담회(4월 20일) 자료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Counter Report under ICESCR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기연 : 02-522-7284 /m321@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이주영 : 02-741-5363 /jylee0530@orgio.net)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

■ 날짜 : 2001년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순서

1. 인권·사회단체의 사회권반박보고서 활동의 취지 및 경과 : 민변 박찬운변호사
2.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및 촉구사항 : 박경신 변호사
3. '사회권연대회의' 참가단의 제네바 활동 계획
-사회권위원회 관련 : 민변 김기연 간사
-대우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관련 :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4. 질의/응답

사회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별첨 자료(이 자료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 요약문 (5쪽-8쪽)
 - 2)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정부에 질의한 사항 (8쪽-11쪽)
 - 3) '사회권연대회의'가 유엔에 회람한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 (11쪽-15쪽)
 - 4) 사회권규약 개괄 및 가입국의 보고 의무 (15쪽-16쪽)
 - 5) 1995년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 (16쪽-20쪽)
 - 6) 2000년 9월 4일 한국정부보고서 심사에 대한 사전회의 보도기사(인권하루소식)(20쪽-21쪽)
- ** 취재 및 보도 요청 (2쪽)

<취재 및 보도 요청>

1. 6년만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다루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95년 1차 보고서 심사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1990년 조약에 가입한 한국정부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뿐, 정작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습니다.

2. 인권단체도 참가단 파견, 견제와 비판에 나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탄압도 도마에

사회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17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6월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해 사회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서 각 권리분야별 국가의 의무를 밝히는 반박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올바른 심사와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참가단을 보냅니다. 4월 23일 회의 첫날, 참가단은 사진과 도표 등을 이용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생생히 전달할 것입니다. 대량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단결권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여성/장애인/난민에 대한 차별, 소득불평등의 심화, 강제철거, 노숙·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사람들, '진료비할인제도'를 넘지 못하는 의료보험, 사교육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려집니다. 특히 최근 날로 심해져가는 정부의 노조 활동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요한 인권 침해의 사례로서 알릴 것입니다.

3. 한국정부는 6년 동안 '사회권' 분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유엔과 한국 정부간의 실천 예상

4월 30일, 5월 1일에는 이틀에 걸쳐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심사는 아이엠에프의 구조조정을 경험한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평가할 시점에 이뤄져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외국에는 인권과 평화의 수호자로만 알려진 현 정부의 사회권 관련 정책과 이행 정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점수를 매길지도 주목됩니다.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는 5월 11일에 발표됩니다.

참고로, 1995년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를 심사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찰의 노조활동공격, 높은 산업재해, 이주노동자차별, 열악한 주거환경, 강제철거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보장, 단결권·파업권 보장, 여성차별철폐, 산업안전강화, 이주노동자 동등대우, 주거권보장, 의무교육,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인권교육의 실시, 극빈·무주택·장애인 복지제도 확충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이번 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사회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한국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의 사회권 실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귀 언론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사회권위원회 회의 기간 중 **4월 23일 민간단체의 발표, 4월 30일-5월 1일의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 5월 11일의 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 발표, 이밖에도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과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등에 귀 언론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자료>

1. 인권·사회단체의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의 취지 및 경과

한국은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가입해 매5년마다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1999년 6월 제출한 2차 보고서가 제25차 회의(2001.4.23-5.11)때 심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7개 단체가 2000년 6월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사회권연대회의)'를 구성했다. 기본적인 목표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올바르게 알려 유엔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부에 문제들을 시정 권고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개괄적으로 평가하면, 정부보고서는 97년 이후 사회권의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실업률, 여성고용현황, 소득분배현황, 산업재해발생률 등 경제·사회적 권리 실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정부 보고서에는 96년 혹은 97년도까지만 제시되어 있다. 또 정부 보고서는 정부가 채택한 정책 및 법률을 나열하고 있을 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 결과 어떠한 진전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권 실현에 역행하는 조치들, 예를 들어 정리해고제의 도입, 산업안전규제의 완화, 파견근로제의 도입,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환경규제의 완화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의 노력만을 선전하고 있을 뿐, 지난 5년간 한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자는 보고절차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은 평가했다.

따라서 인권·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 활동을 통해 지난 5년 간의 사회권 실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특히 IMF의 영향 하에 이뤄진 정책들이 사회권의 실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알리기로 했다.

• 2000년 6월 29일 : '사회권규약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사회권연대회의)' 구성, 공동의 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2000년 9월 4일-8일 : '사회권연대회의', 제25차 사회권위원회 사전실무분과회의에 약식보고서 제출

• 2000년 9월 4일 :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파스토마나 이성훈 사무국장, '사회권연대회의'를 대신해 사전실무분과회의에서 약식보고서의 내용 발표(당시 인권하루소식 기사 별첨)

• 2000년 9월 8일 :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25차 회의 전까지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서(내용 별첨) 채택

• 2001년 2월 - : '사회권연대회의'의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 : 내용 별첨), 유엔의 공식문서로 사회권위원들과 가입국들에 회람됨.

• 2001년 4월 11일 : '사회권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에 미리 보고서 제출

2.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및 촉구사항

: 5쪽부터 시작되는 요약문 참조

3. '사회권연대회의' 참가단의 제네바 활동 계획

<사회권위원회 관련>

4월 23일 : 유엔사회권위원들 앞에서 사진, 통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사회권 상황 발표

4월 30일-5월 1일 : 정부대표의 발언 등 한국정부 보고서 심사과정 모니터링

정부 보고서 심사 전후 : 위원들과의 간담회 혹은 개별 면담

5월 3일 : 귀국

5월 14일 경 : '사회권연대회의' 기자회견 예정, 내용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5월 11일 경 발표할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를 중심으로.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관련>

세계고문방지연합(OMCT :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국제자유노련(ICFTU),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등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인권단체를 방문해, 대우차 노동자에 대한 4월 10일 경찰폭력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적 관심 및 행동을 촉구. 관련 내용을 담은 비디오 전달. 특히 국제법률가위원회에는 박훈 변호사와 관련, 사법 명령 수행에 대한 위협의 문제를 제기.

2.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보도요청서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Counter Report under ICESCR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날짜 : 2001년 5월 13일 일요일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관련 부서 기자

발신 :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16-286-3340)

총 매수 : 8장 <별첨> 1. 주요 우려사항 및 제안과 권고 2. 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최종견해 원문(영문)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보도 요청>

유엔 인권기구, 한국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

IMF의 일방적 요구 수용, 시장경쟁력 중심 - 사회권 뒷전

국가보안법, 높은 방위비 - 사회권 실현의 장애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등 강력한 권고

1. 우리 사회의 참된 언론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의 내용에 대해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지난 5월 11일 금요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의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심의기관입니다. 최종견해는 '긍정적인 면', '주요 우려 사항', '제안과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3. 사회권위원회는 전체적으로 IMF 체제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규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과신(過信)이 사회권 실

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상태의 악화,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 파탄이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화되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빠른 경제발전의 속도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권리들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들은 경제회복과 시장경쟁력확보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4.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58%)이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강력한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직업안정성 등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을 재검토하고(혹은 지위를 재고하고) 사회적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strongly)' 권고했습니다.

5. 위원회는 또 파업권을 제약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량해고로 유발된 최근 한국의 노동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점을 주요 우려 사항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파업을 범죄시하는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사회적인 이해 실현을 위해 파업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6. 위원회는 주거권 침해에 관한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해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민간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노숙자나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처럼 기준이하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7. 교육권과 관련, 위원회는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가족들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이 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8. 이밖에 위원회가 제시한 13개 항의 권고내용에는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이행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를 1991년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치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 부여 △여성부에 충분한 예산 배정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인권 관련 국가행동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9. 한편, 특이할 만한 것은 국가보안법과 높은 방위비를 사회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점입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에 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핵심분야들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불균형적 현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9. 우리 정부는 이번에 사회권위원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규약을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권고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 기대됩니다.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

Korea Network for the 2nd Submission of the Counter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김기연 : 02-522-7284 / m321@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이주영 : 02-741-5363 / jylee0530@orgio.net)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날짜 : 2001년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순서

1. 인사말 ----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2.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기까지
-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의 활동 경과
3. 제네바에서의 심사 과정을 통해 본 최종견해(권고)의 배경 설명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4.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배정배 부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수호 위원장
5. 질의/응답

이의 참석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낙돈 교수님, 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부장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은아 간사님, 노동과 건강연대 최은희 님 등 참여단체 대표 및 집행책임자,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차봉천 위원장

- <별첨> 1. 최종견해 중 주요 우려사항과 제안 및 권고(표)
2. 최종견해(한글본)

*이 자료집에는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음.

성명서

지난 5월 11일 금요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IMF 체제 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에 과잉 의존하면서 국민들의 사회권 실현을 고려하지 않아 대량해고, 고용상태의 악화, 소득불평등이 심화됐으며 가정파탄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화"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통해 강제되고 있는 요새 심리(fortress mentality)의 만연"과 높은 방위비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권 실현의 장애 요소들을 매우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조차 인정하는 사회권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수립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위의 재검토,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1차 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1991년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설치할 것과 규약에 대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여성부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고, 인권에 관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 등 정부가 규약을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갖추라 권고하였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부각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원회는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됐던 지난 최종견해에 담겨있던 제안사항과 권고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다. 규약가입국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원회의 권고가 객관적인 현실과 핵심 장애요소에 관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원회의 최종권고를 환영한다. 앞으로 사회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